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82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김대식
송석준 · 최수진 · 김선교
유용원 · 백종현 · 고동진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2.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살균 또는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2.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을 검수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3.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교육 일자·내용과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6조 중 “제51조 또는 제52조를”을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1의3. 제5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5의2. 제51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 5의3. 제52조제3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1조제3항 또는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조리사)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51조(조리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u></p> <p><u>2.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살균 또는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u></p> <p><u>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제52조(영양사)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52조(영양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u></p>

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2.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을 검수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3.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교육 일자·내용과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것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6조(벌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

제101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4.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④·⑤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의3. 제5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1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5의3. 제52조제3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